



일터에서의 유해 · 위험 예방 조치 관리감독자의 유해 · 위험 방지 업무 등



작업 전 안전점검 당신의 생명을 지킵니다

2015 - 교육미디어 - 648

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조항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5조	관리감독자의 유해 · 위험 방지 업무 등
제36조	사용의 제한
제37조	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

※ 상기 조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조항이 있음을 유념한다.



☑ 일터에서 적용하여야 할 유해 · 위험 예방 조치

🗨 관리감독자의 유해 · 위험 방지 업무 등

- **관리감독자***(건설업의 경우 직장 · 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 ·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함)로 하여금 **별표 2****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유해 ·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

*** 관리감독자** :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·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, 사업주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 ·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 · 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(자세한 내용은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10조 참조)

- 1 관리감독자가 지휘 ·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·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·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
-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·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· 사용에 관한 교육 · 지도
-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
-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 · 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 · 감독
- 5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,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· 조언에 대한 협조 등
-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· 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

**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유해 · 위험 방지 업무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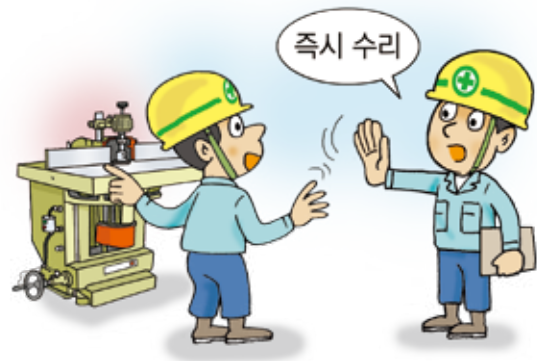
- ① 프레스 등 사용 작업
- ② 목재가공용 기계 취급 작업
- ③ 크레인 사용 작업
- ④ 위험물 제조/취급 작업
- ⑤ 건조설비 사용 작업
- ⑥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· 용단 또는 가열작업
- ⑦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취급작업
- ⑧ 거푸집 동바리의 고정 · 조립 또는 해체 작업 / 지반의 굴착작업 /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 · 조립 또는 해체 작업 / 터널의 굴착작업/건물 등의 해체작업
- ⑨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·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
- ⑩ 발파작업
- ⑪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
- ⑫ 화물취급작업
- ⑬ 부두와 선박에서의 하역작업
- ⑭ 전로 등 전기작업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, 점검, 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
- ⑮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하는 작업
- ⑯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작업
- ⑰ 석면 해체 · 제거작업
- ⑱ 고압작업
- ⑳ 밀폐공간 작업

- **별표 3*****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조치

***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작업시작 전 점검이 필요한 작업의 종류

- ① 프레스 등 사용 작업을 할 때 ②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 ③ 공기압축기를 가동할 때
- ④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⑤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
- ⑥ 리프트(간이리프트를 포함한다)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⑦ 곤돌라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
- ⑧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· 달기체인 · 섬유로프 · 섬유벨트 또는 혹 · 샤클 · 링 등의 철구를 사용하여 고리걸이 작업을 할 때 ⑨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⑩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
- ⑪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⑫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할 때
- ⑬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⑭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
- ⑮ 이동식 방폭구조 전기기계 · 기구를 사용할 때
- ⑯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
- ⑰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할 때 ⑱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

- 관리감독자의 작업시작 전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
수리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 실시



사용의 제한

- **법 제33조***에 따른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**법 제34조***에 따른 안전인증기준, **법 제35조***에 따른 자율안전기준 또는 **법 제36조***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 · 기구 · 설비 및 방호장치 · 보호구 등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* 법 제33조, 제34조, 제35조, 제36조의 자세한 내용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참조

| 법 제33조 기계 · 기구별 방호조치 대상(예시)

기계 · 기구명		방호장치	기타 방호조치
예초기		날접촉예방장치	• 작동부분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 설치 • 동력전달 및 속도 전달 부분에는 덮개 또는 방호망 설치 •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설치
원심기		회전체 접촉예방장치	
공기압축기		압력방출장치	

기계 · 기구명	방호장치	기타 방호조치
금속절단기		날접촉 예방장치
지게차		헤드가드, 백레스트, 전조등, 후미등, 안전벨트
진공포장기		• 작동부분 돌기부분은 문함형으로 하거나 덮개 설치 • 동력전달 및 속도 전달 부분에는 덮개 또는 방호망 설치 • 회전기계의 물림점에는 덮개 또는 울설치
랩핑기		
		구동부 방호 연동장치, 고정식 방호가드 (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부위)

| 법 제34조 및 35조 유해 · 위험기계별 안전인증 · 자율안전확인 대상(예시)

기계 · 기구명	방호장치	기계 · 기구명	방호장치
프레스 · 전단기	 광전자식 안전장치 등 방호장치	보일러	 압력방출 장치
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	 안전기	롤러기	 급정지 장치
폭발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전기기계 · 기구	 방폭용 전기 기계 · 기구	연삭기	 덮개
교류 아크용접기	 자동전격 방지기	목재가공용 동근톱	 반발예방 장치 및 날 접촉 예방장치
크레인 · 승강기 곤돌라 · 리프트	 과부하 방지장치	동력식 수동대패	 칼날 접촉 예방장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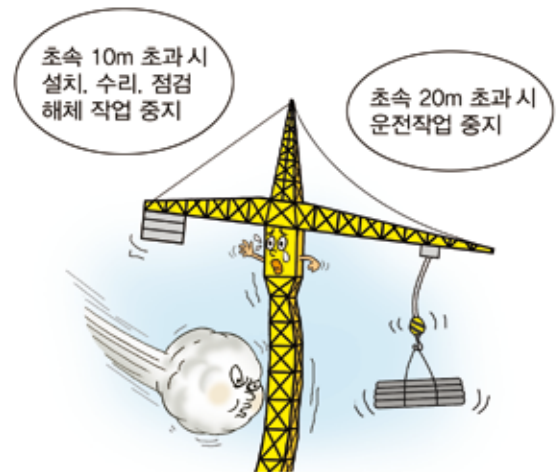
기계 · 기구명	방호장치	기계 · 기구명	방호장치
압력용기 	압력방출 장치	산업용 로봇 	안전매트
		정전 및 활선작업용 절연용 기구 	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

| 법 제36조 안전검사 대상

- ① 프레스 ② 전단기 ③ 크레인[이동식 크레인과의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(hoist)는 제외] ④ 리프트
 ⑤ 압력용기 ⑥ 곤돌라 ⑦ 국소 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 ⑧ 원심기(산업용만 해당) ⑨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
 ⑩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⑪ 롤러기(밀폐형 구조는 제외) ⑫ 사출성형기[형 체결력 294킬로뉴턴(KN) 미만은 제외]

☑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

- 비 · 눈 · 바람, 기타 기상상태 불안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경우 작업을 중지
(단, 태풍 등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긴급 복구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외)
- 순간풍속이 초속 10m 초과 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 · 수리 ·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초속 20m 초과 하는 경우 타워 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



☑ Check Box |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내 풍속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

- 순간풍속 30m/s 초과하는 바람 또는 중진 이상 진도의 지진 발생 이후 옥외 양중기 사용 전 미리 이상 유무 점검(제143조 참조)
- 순간풍속 30m/s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 주행크레인에 이탈방지 조치 실시(제140조 참조)
- 순간풍속 30m/s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 건설용 리프트/승강기 받침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등의 방지 조치 실시(제154조, 제161조 참조)
- 풍속 10m/s 이상, 강우량 1mm/h 이상, 강설량 1cm/h 이상인 경우 철골작업 중지(제383조 참조)

「일터에서의 유해 · 위험 예방 조치」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조항에서 해당 유해 · 위험 예방 조치 내용을 사진, 삽화 등을 통해 현장에서 좀 더 적용하기 쉽도록 구성한 것으로,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, 위험성평가, 교육 등에 활용하길 바랍니다.